

대전보건대학 학칙시행세칙

2005. 01. 20. 부분개정
 2006. 04. 17. 부분개정
 2007. 09. 07. 부분개정
 2008. 10. 20. 부분개정
 2009. 08. 07. 부분개정
 2010. 04. 13. 부분개정
 2011. 03. 0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전보건대학(이하“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90조에 따라 학칙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대학의 학사에 관한 사무는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단, 대학평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이 세칙에 우선한다.

제2장 신입학

제3조(신입생모집) 신입생은 매 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의거 모집하며, 모집요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입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총장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입생모집요강을 공고한다.

제4조(입학전형방법) 본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방법은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으로 한다. 단,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합격자사정방법) 본 대학 신입생 입학사정방법의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편입학·재입학·전과

제6조(편입학) ①편입학은 학칙 제26조에 의거 모집하되 편입생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이 정한 편입생 모집계획에 의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편입학 허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학년 1학기 초 28일(4주) 이내에 허가한다.
2. 각 과별 정원(주·야)내에 결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과의 요청에 의해서 허가한다.
3. 결원판단은 편입학 학년을 기준으로 모집단위 입학정원에서 순수입학학년의 재학생을 뺀 숫자의 부족인원을 결원으로 판단한다. 단, 재학생 중 정원의 입학생의 수는

제외한다.

4. 삭제.

③삭제.

④편입학자의 학점 인정은 본 대학 교과과정을 기준으로 사정하되 동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소정 학점만 인정한다.

⑤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 중 전항의 인정학점을 제외하고 잔여학점에 대하여는 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으나 최고 40학점을 초과인정 할 수 없다.

제7조(재입학) ①재입학은 학칙 제27조에 의거 제적당시 학년이하의 원적학과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허가한다.

②재입학은 매학기 초 4주(28일)이내에 허가한다.

③결원판단은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모집단위 입학정원에서 순수입학학년의 학생을 뺀 숫자의 부족인원을 결원으로 판단한다.

④다음 각 호의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1. 학칙 제70조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이중학적 보유자로 제적된 사람

⑤재입학한 자는 기 취득 학점을 전부 인정 할 수 있으나 불량한 과목에 대하여는 재이수시킬 수 있다.

제8조(학력조회) ①본 대학에 입학·편입학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전적교에 학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학년도의 신입생에 대하여는 입학전형 당시 제출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자는 입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
2. 2중 학적을 가진 사람
3. 입학모집요강에서 정한 입학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편입학자·복학자의 재학년한) 편입학자, 재입학자 및 복학자의 재학년한은 수업년한과 관련하여 제한하지 않는다.

제10조 (전과) ①전과는 학칙 제28조에 의하되 전과 시기는 학기 초 4주(28일)일 이내에 허가한다. 단, 중도 수료자 및 졸업탈락자는 전과 할 수 없다.

②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전과원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출입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한다. 학점 인정은 학칙 제28조의 제5항에 의하여 인정한다.

③전과 희망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과의 시기, 방법, 절차,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4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11조(등록) ①학생은 학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학기 총장이 공고한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학생의 자격을 가진다.

②등록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입생 : 입학전형에 의하여 합격한 자는 공고한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학수속을 필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입학 의사없는 것으로 간주 입학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2. 재학생 : 매 학기 초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재학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미등록 제적 처리한다.
3. 편입학자 : 당해학기 등록금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4. 학칙 제54조에 의거 학년 유급된 학생은 해당 학년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5.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 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다만, 휴학 중인 자의 등록금반환 기준일은 휴학 처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제12조(등록금 체납자) 미등록(이하 "등록금 체납자"를 말한다) 중에 있는 자가 수강신청하여 추가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는 제적하고 분납하는 자가 해당 학기 끝날 때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매 학기말을 기준으로 미등록제적 처리하며 당해학기 성적은 자동으로 상실한다.

제13조(졸업탈락자의 학점등록) ①2년제 4학기(3년제 6학기)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졸업학점 부족으로 졸업 탈락된 자가 계속하여 잔여학점을 이수 하고자 할 때는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단, 이수학점이 10학점 미만일 경우에 한한다.

②등록금은 당해학기 제2학년(3년제 제3학년)등록금을 기준하며 신청학점수가 1~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1/6해당액, 4~6학점까지는 등록금의 1/3해당액, 7~9학점까지는 등록금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일 경우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학점 등록하고자 하는 학기가 수강과목 개설학기과 맞지 않고 계절수업으로도 졸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학기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휴학은 학칙 제31조2항의 규정에 적용 받지 않는다.

제14조(복학생 등록) ①수업일수 2/4실시 전 일반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 휴학 전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 당해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한다.

②수업일수 2/4실시 이후 일반휴학한 자는 전항에 관계없이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병역의무 이행(일반휴학 후 군복무연장 휴학자 포함) 및 법령에 의한 사유로 휴학한 자는 전항에 관계없이 휴학 전 납부한 등록금을 전액 대체 인정한다.

제15조(수강신청) ①매학기 개시 전 공고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수강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강신청 학점은 학기당 최저 15학점, 최고 24학점을 초과 신청 할 수 없다.
2. 동일 교과목을 중복 신청 할 수 없다.
3.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신청 할 수 없다.
4. 수강신청 없이 임의로 수강 할 수 없다.
5. 수강신청을 한 후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성적은 “F”로 처리한다.
6. 재수강 과목이 시간표 중복 등으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 할 경우는 주·야간 및 타과에서 수강 할 수 있다.
7. 수강신청한 학점이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한계 학점선까지 재수강 과목을 제외한 신청과목의 하단부터 삭제 할 수 있다.
8. 해당학과 교양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고도 학점미달일 경우에는 동일계열의 선택과목이나 타학과에 개설된 과목 중 유사과목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9. 수강신청 학생수가 15명 이하일 경우 그 교과목은 총장이 폐강할 수 있다.

제16조(재이수) ①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에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동일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단, 취득학점이 D+학점 이하인 교과목에 한한다.

② 동일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이전학점은 무효로 한다.

③ 재이수한 교과목 중 이미 취득한 성적의 무효로 인한 그 당해 학기의 학사경고는 취소되지 아니한다.

제17조(수강신청절차) 수강신청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수강신청은 공고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다시 설정하여 추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학생은 매학기 개강 전 지도교수 및 학과장 지도하에 이수하여야 할 과목을 수강신청한다.

③ 수강신청확인서는 수업일 1/4이내에 인쇄하여, 개인별 서명을 받아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학기 중 일반휴학자 및 군입대휴학자 중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입영하는 자의 수강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제18조(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수강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폐강 및 수업시간 변경) 으로 인하여 수강이 어려운 경우 학기 초 2주일 이내에 변경 및 취소해야 한다.

제19조(복학생, 재입학생의 수강신청) ①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 또는 재입학 당해 학기부터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 한다.

② 복학(재입학)후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변하여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졸업학점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대체과목을 지정받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제20조(편입, 전과생의 수강신청) 편입학생 및 전과 학생의 수강신청은 학점 사정을 받아 당해 학년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 한다.

제5장 휴학 및 복학

제21조(일반휴학) 휴학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 휴학 및 장애인 휴학은 예외로 한다.

1. 가정사정이나 개인사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는 보증인 연서로 학기 등록마감 전까지 지도교수/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2. 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원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을 필하여야 하며 지도교수/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3.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사가 발행한 치료기간 1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도교수/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학 학기가 상이하여 학기 중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등록을 필한자로서 해당학기 수업일수 2/4가 경과된 후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소멸된다.

제22조(군입대 휴학) 병역의무 이행으로 복무기간 동안 휴학 할 수 있으며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근무자는 1년 단위로 연기원을 제출하여 휴학할 수 있다.

1.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 등을 발부받아 입영하는 자는 최소 입영 6일전에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 등의 사본 1통을 첨부하여 지도교수/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군입대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통상 의무복부 연한으로 하고 복학 시 학점이수의 사정에 따라 학기조정기간(1년)을 둘 수 있다.
3. 군복무중인자는 현역복무확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인서 1통을 소속부대에서 발급받아 사본 또는 원본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군입대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당해학기 수업일수 3/4 경과후에 입영하는 자는 당해학기 이수를 위한 학점인정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해당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다.
5. 일반휴학자가 휴학기간 중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하여야한다.

제23조(휴학의 취소) ①휴학의 사유가 소멸되어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원인 발생후 6일 이내에 교무처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군입대후 귀향조치 자는 귀향즉시 귀향증 사본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휴학원 제출절차 및 증빙서류) ①휴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휴학원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도교수/학과장 및 기타 확인부서를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휴학원 제출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 병 : 의사 진단서 1부
2. 가정사정 : 보호자 연서로 된 사유서 1부
3. 천재지변 기타 : 관할 공공기관장이 발생하는 증명서 1부

4. 군입대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1부

③휴학기간 중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학과사무실이나 교무처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복학) ①휴학기간이 만료된 복학 대상자에게는 복학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복학하고자 할 때는 당해학기 등록기간 내에 교무처에 소정의 복학원을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복학은 매학기 초 4주(28일)이내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③복학 시는 복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역증서, 주민등록초본, 건강진단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④복학생은 복학 승인을 받은 후 등록을 필해야하며, 휴학기간 만료 후 당해학기 초 4주(28일)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는 미복학제적 처리 할 수 있으며, 제적 처분하고자할 때에는 본인 또는 학부형에게 제적예정, 제적사실과 재입학 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입대휴학자가 군인의 신분으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는 소속 부대장의 수강승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⑥정당한 절차를 밟아 휴학한 자라도 휴학기간 중에 학칙을 위반하였거나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복학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⑦휴학기간 중이라도 학점 재이수 등의 사유로 조기 복학하고자 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복학 할 수 있다.

제6장 교과 및 수업

제26조(교육과정) ①교육과정은 학칙 제35조에 의거 편성하되, 당해학년도 개시 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은 교양필수교과, 교양선택교과, 전공필수교과, 전공선택교과, 교직교과로 구분하며 각과 학과장이 시안을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단, 신설과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해당분야 교수의 자문을 받아 교육과정 시안을 작성, 검토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③교육과정의 개편안을 제출할 때에는 개편사유와 신·구 교과목, 폐지 및 대체과목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④편성, 운영중인 교육과정은 학기중이나 2학기(후기 학기)초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편할 수 있다.

⑤학기 중 실습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는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⑥국제표준 교육과정 운영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교과이수) ①교과이수는 학칙 제35조에 의거 학기별로 이수하되 교양필수교과는 8~12%, 전공필수, 선택 및 교직교과 88~92%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원자격 발급 대상자 중 동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교과 과목 및 기본 이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28조(복학생, 재입학생의 교과이수) ①복학 또는 재입학 이후에는 당해 학기부터 현

교육과정에 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②복학 전 기이수한 과목이 중복 개설된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제29조(수업시수) ①1학기 각 교과별 기본 강의시수는 1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실험실습 실기교과 과목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 총장의 승인 받아 15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결강, 공휴일 및 기타 사정으로 기본 강의시수에 미달될 때에는 보충강의를 실시해야 한다.

제30조(수업시간표) ①수업시간표는 교무처에서 작성 총장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수업시간표는 매학기 2주일전에 발표하고 확정 발표된 시간표는 교수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1조(수업시간변경) 수업시간 발표 후 담당교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 시간을 영구 또는 임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업시간 변경원을 매학기 개시 1주일전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휴강 및 보강) ①당교수의 공무 또는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총장 허가를 받아 휴강 할 수 있다.

②휴강된 수업은 수업시간 변경원을 제출하고 보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계절수업) ①학칙 제12조 2항에 의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계 및 동계방학 중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②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출강부) 각 교과목 담당교수(시간, 결임, 초빙 등)는 강의 후에 컴퓨터의 출강부에 입력하여야 하며 누락 시에는 결강처리 한다.

제35조(강의계획서)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학기 담당교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실험실습계획서)를 컴퓨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교과목을 2인 이상이 담당 할 경우는 공동명의로 강의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출석) 학생은 한 학기 총 강의시간의 3/4이상을 초과하여 출석하여야 해당과목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제37조(출석부) ①출석부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작성하고 해당 학과에서 일괄 수합하여 확인 후 최소한 1년간 보관한다.

②수업 시작 후 출석자는 지각으로 하며 총 지각시간을 해당과목의 주당시수로 나눈값(소수점이하 절삭)을 결석횟수로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출석인정) ①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을 경우 학과에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에서 승인을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이 경우 결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1. 애 경 사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2일

- 다.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 2일
- 라. 본인 결혼 7일
- 마. 삭제
- 바. 삭제
- 사. 삭제
- 2. 질병
 - 가. 삭제
 - 나. 입원가료(3주 이내) 입원기간의 100%인정
- 3. 병사관계 : 해당기간
- 4. 총장이 허가한 공적인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5. 훈련, 출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2부 학생에 한함) : 6일 이하 인정
- 6. 기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

제7장 시험 및 성적평가

제39조(시험종류) 시험은 다음과 같이 중간평가, 종합평가, 수시평가, 추가시험, 재시험으로 구분한다.

1. 중간평가 : 중간평가는 학기 8주째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2. 종합평가 : 종합평가는 학기 15주째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3. 수시평가 : 중간평가, 종합평가 외에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수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4. 추가시험 : 중간평가,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종료 후 실시한다.
5. 재시험 : 중간평가, 종합평가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40조(시험문제 출제) ①중간평가, 종합평가 시험문제 인쇄 의뢰는 시험개시 2주일전에 하며, 인쇄 의뢰하고자 하는 교과목 담당교수는 시험개시 1주일 전까지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험·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에 대하여는 평소 수업시간을 이용 수시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시험시간표) ①중간평가, 종합평가 시험의 전공과목 시간표는 시험 1주일전에 해당 학과에서 작성하고, 교양과목은 교무처에서 작성한 후 전공과목 시간표와 취합하여 공고한다.

②추가시험 시간표는 시험 5일전에 발표하며, 대상인원이 적을 경우는 담당교수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시험중 학생 준수사항) 대리시험 및 기타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는 해당 과목 성적을 무효화한다.

제43조(부정행위자 처리) ①시험 중 부정행위자를 발견한 감독자는 그 증거물을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부정행위자는 학생징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③전항의 사유로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는 해당과목 이후의 전 과목 무효화 한다.

제44조(시험성적표 제출 및 보관) ①삭제.

②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입력 기간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성적을 입력한 후, 마감된 성적단표를 2부 출력하여 확인 서명하여 1부는 교무처에 제출하고 1부는 본인이 보관한다.

③시험지는 최소한 해당학기가 종료될 때까지 각 교과 담당교수가 보관하여야 한다. 단, 시간강사의 시험지는 학과에서 보관한다.

제45조(성적평가) ①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학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각 등급별 배점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배점	평점	등급	배점	평점
A+	100 - 95	4.5	C0	74 - 70	2.0
A0	94 - 90	4.0	D+	69 - 65	1.5
B+	89 - 85	3.5	D0	64 - 60	1.0
B0	84 - 80	3.0	F	59이하	0
C+	79 - 75	2.5			

③학업성적 배점비율은 종합평가 및 수시평가(80%), 출석 및 과제(20%)로 한다.

④종합평가에 결시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한 자의 성적은 "B+"급을 초과할 수 없고, 재시험은 "C+"급을 초과할 수 없다.

⑤재이수시 취득학점은 "A"급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현장실습)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현장실습 의무대상 학과의 현장실습 교과목은 필수교과의 필수로 한다.
2. 실습학점은 3학점이내로 한다.
3. 실습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며, 하계 또는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4. 실습장소 선정은 학과장이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 내에서 실시할 수도 있다.
5. 실습기간 중 지도교수는 실습장소의 실습생을 순회방문 지도하여야 하며 제반 경비는 학교비에서 부담한다.
6. 현장실습 성적평가는 현장지도 책임자가 평가한 성적, 과제물, 현장실습 일지와 지도교수의 종합평가를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7. 현장실습에 필요한 제반 서식은 따로 정하되 공통서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의 성격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

제47조(출석성적) ①출석성적은 과제물과의 합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교수가 정한다.

②한 학기간 총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결F”로 처리한다.

제48조(군입대휴학자 및 장기입원가료자의 성적평가) 학기 도중 군입대자 및 입원 가료중인 자의 성적은 수시평가 성적을 기준하여 당해학기 성적을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총 수업시간의 3/4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제49조(정원의 입학자 학점인정)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전문대학졸업자, 학사학위취득자)의 교양학점 인정은 다음과 같다.

1.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적교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학점인정 허가원을 학과장 및 지도교수를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양과목 중 본 대학 교양과목과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한다.
3.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단위가 많을 때에는 본 대학 학점단위로 적용한다.
4. 학점인정은 졸업학점의 10%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5. 학점이 인정된 교과목은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며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한다.

제50조(취득학점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학점을 인정치 않는다.

1. 동일 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2. 소정의 수강신청 학점 수를 초과 이수한 경우
3.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경우
4. 제43조 3항에 해당할 경우
5. 기타 총장이 학점이수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51조(성적열람) 매학기 이수한 학업 성적은 학기 종료 후 본인이 성적열람기간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52조(성적의 정정) ①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성적을 열람한 후 성적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성적정정기간 이내에 담당교수 또는 교무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성적정정기간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정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

②제기된 성적에 착오와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소정의 성적정정원을 제출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정할 수 있다.

제53조(성적평균 계산) ①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하여 평점합계를 산출하고 평점합계를 신청 학점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text{성적평균} = \frac{\text{평점계} [\sum (\text{과목별 취득학점수} \times \text{평점})]}{\text{수강신청 학점 수}}$$

다만, 대외적으로 발급되는 성적의 총평점평균 산출방법은 "F"과목의 학점 및 성적 또는 재이수한 과목 중 낮게 평가한 학점 및 성적은 제외하고 산출한다.

②전항의 경우 소수점 3째자리에서 사사오입 한다.

③1993학년도이전 입학자의 성적을 발급할 때에는 총평점평균을 4.5로 환산하여 발급하

고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총평점평균} = 4.5 \times \frac{\text{이수한 총평점평균}}{4.0}$$

제54조(성적순위) ①성적순위는 평점평균 서열로 한다.

②평점평균이 같을 경우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

1. 평 점 합 계
2. 취득 학점계
3. 취득 과목수
4. 실 점 평 균

제55조(학사경고) ①총장은 성적평가결과 1.20미만인 사람은 이를 경고한다.

②학사경고 확정자에게는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진급 및 졸업

제56조(진급) 진급사정은 종합성적에 의거 매학년도 말에 하며, 2학년 또는 3학년 진급에 관한 제반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제57조(진급탈락) ①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상급학년 과정을 이수하기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진급 할 수 없다.

②진급 탈락자 중 학업 성취의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제58조(졸업) ①졸업사정은 1.2학년(3년제 1.2.3학년) 종합성적에 의거 매학년도 말에 하며, 졸업에 관한 제반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②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로서 교무위원회에 통과한 자를 졸업 합격자로 하며 졸업합격자에게는 소정의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③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1. 4개학기 (3년제 6개학기)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총 80학점 (3년제 120학점)이상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

④졸업사정시 종합 성적순위는 전학기 총 평균성적 서열로 한다.

$$\text{총평점평균} = \frac{\text{총평점계 [4개학기 평점계 (3년제 6개학기 평점계)]}}{\text{총 수강신청 학점수}}$$

제59조(졸업탈락) ①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도 졸업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졸업사정에서 불합격된 자를 졸업탈락자라 한다.

②졸업학점 미달로 졸업 탈락된 자는 잔여학점을 이수 후기졸업 할 수 있다.

제60조(졸업시기) ①졸업은 전기졸업과 후기졸업으로 구분 실시하며 그 시기는 전기 졸업은 2월중, 후기 졸업은 8월중으로 한다.

제9장 유급 및 학사제적

제61조(유급) 동일학년에서 연속(1.2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 및 졸업탈락된 자는 1년 단위로 유급 시킬 수 있다.

제62조(유급자 등록) ①유급자는 소정 기간내에 해당 학년 재등록을 필해야 한다.

②소정 등록 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는 자는 재이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제적 처리 한다.

제63조(유급자 수강신청) 학년 유급자는 기취득한 해당 학년 전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전 과목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64조(학사제적) ①학사경고 대상자 중 연속 3회째 성적이 전과목 F(평균 0.00)일 경우에는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불량제적 할 수 있다.

②2회 연속 유급 시에는 자동 제적처리 한다.

③동조에 의하여 제적이 확정된 자에게는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장 위원회

제65조(교무위원회) ①총장의 자문에 응하고 학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성적평가 및 사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의 자격과 구성은 학칙 제79조에 따른다.

제66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학칙 제21조에 의거 총장은 모집·선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입학시험 준비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편입생 및 재입학생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총장, 교무처장, 대외협력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각 학과장, 기타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교무처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7조(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하고자 학칙 제20조에 의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감사를 하여 보고한다.

1. 입학원서 접수에 관한 사항
2. 입학성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
4. 입학성적 사정 및 합격자에 관한 사항
5. 추가모집 및 기타 입시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하며 위원장포함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장 제증명 발급

제68조(증명서의 종류) 본 대학에서 발생하는 학적관계 증명서는 졸업, 졸업예정, 재학, 재적, 수료, 성적증명, 추천서 및 기타 확인서로 구분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다.

제69조(발급구분) 본 대학에 적이 있는 자에게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각종 증명서를 발급한다.

1. 졸 업 증 명 서 : 본 대학 졸업자
2. 졸업예정증명서 : 제2학년 4개학기, 제3학년 6개학기의 등록을 필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한 자
3. 재 학 증 명 서 : 현재 재학중인 자
4. 재 적 증 명 서 : 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5. 휴 학 증 명 서 : 본 대학에 휴학중인 자
6. 수 료 증 명 서 : 학칙 제52조에 해당하는 자
7. 성 적 증 명 서 : 재학생, 졸업생, 기타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1학기이상 수학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8. 추 천 서 : 졸업자 및 재학생중 품행이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발급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추천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9. 기 타 확 인 서 : 필요에 따라 발급 할 수 있다.

제70조(발급절차) ①제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발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증명서는 학적부 및 졸업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대조 확인하여 발급한다.
2. 전항의 기록, 대조, 확인을 위하여 확인란에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동발급기 및 인터넷으로 발급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증명서 발행은 총장명으로 발행한다.
4. 외국어 증명서는 번역하여 발급한다.
5. 증명서 발급에 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1조(증명발급 수수료) 제증명을 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장 학번 및 학적부

제72조(학번) ①학생 개인에게 학번을 부여하며 학번은 입학년도 4단, 학과번호 2단, 개인번호 4단으로 구성한다.

②학번은 졸업시까지 변경하지 못하며, 복학이나 재입학의 경우 미리 부여된 학번을 그대로 사용한다.

제73조(학적부 작성 및 기록보관) ①교무처는 입학(편입학 포함)허가 후 60일 이내에 개인별 전산학적부의 파일을 생성·관리하여야 하며, 졸업·수료·제적 30일 이내에 학적부를 출력·비치하고, 졸업·수료·제적 3년 경과 후 보조기억장치 또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사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삭제

제74조(학적부 관리) 학적부는 망실, 화재, 도난방지를 위해 별도의 관리실에 철저히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소정 목적의 열람 외에는 외부 반출을 일체 금한다.

제75조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①기재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정이 승인된 사항은 정정하고 정정자의 날인과 년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표1]

등록금의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전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8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1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중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 8장, 9장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군사교육 폐지로 인한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8학년도까지 대학생 군사교육 실시령에 의거 군사교육 3학점 이수자에 한하여 본 규정 제14조 5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성적평가 중 불합격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수업년한 연장에 따른 경과 조치) 1990학년도까지 입학한 자로서 휴학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 및 타교에서 편입학한 자가 졸업하는 경우는 제18조 1항 2항, 제53조, 제54조 1항 2항, 제55조 1항 3항, 제64조 2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1994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 ②(치기공과, 치위생과 수업년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1993학년도까지 입학한 자는 수업년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성적변경 경과조치) 1993학년도까지 입학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사경고 경과조치) 1993학년도까지 입학한 자의 학사경고는 1.20미만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납입금반환에 따른 경과조치) 1997년 8월14일부터 발생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1997년 8월 13일 이전까지의 자는 제5장 제17조 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재이수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1998년 2월 졸업자부터 제5장 제20조의 2를 적용하고 1997학년도 졸업자 (후기졸업자포함)까지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현장실습 성적평가에 따른 경과조치) 1997학년도 졸업자부터 성적을 평가하고 1996학년도 졸업자까지는 제7장 제44조의 2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⑤(정원의 입학자 교양학점 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1997학년도 정원의 특별전형 입학자(이하 "전문대 졸업자 및 학사학위소지자"라 말한다)부터 적용하고 1996학년도까지의 정원의 입학자는 제7장 제46조의2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납입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총수업일수의 3분의 1경과전	등록입금의 3분의 2해당액
총수업일수의 3분의 1경과한 날부터 총수업일수의 2분의 1경과전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총수업일수의 2분의 1경과후	반환하지 않음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납입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6분의5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2해당액
학기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1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 제16조 1항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수업료의 반환 기준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0. 04. 13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3조(학적부 작성 및 기록보관)의 사항에 대하여는 2010. 03.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1. 02. 0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1조(등록)의 사항에 대하여는 2011. 03. 01부터 시행한다.